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0. . .	
연월일	(제 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박 양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20. 2. 18.) 및 ’21. 1. 1. 시행 예정인바, 동 법률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에 관한 지자체장의 사무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법조문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서 제출(제6조제1항)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업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제10조제1항, 제2

항 및 제3항), 노래연습장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11조제2항),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노래연습장업 등록 직권말소의 확인(제14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양하도록 함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있는 법조문 문구를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약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제7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관련된 조문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및 부처에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 -----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 ----- ----- ----- ----- ----- -----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

----- 시장·군수·구청장-----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

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군수·구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시장·군수·구청장-----

-----.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① ---

----- 시장·군수·구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

-----.

-----.

② -----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③ -----

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생략)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 시장·군수·구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시장·군수·구청장-----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군수·구청장-----

· <u>구청장</u>은 제1항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203-2464